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68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3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3월 27일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495호)과 2025년 3월 31일 김규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30호) 그리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시장이 제출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644호)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시립체육시설 중 잔디가 식재된 시설에 대하여 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기준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잔디 보호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잔디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.
-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 군인을 시립체육시설 이용 요금 할인 대상에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

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여 이들의 체육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4제1항).
- 나. 행사·경기 주최자가 잔디 보호를 위해 사전·사후 관리 조치를 이행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4제2항).
- 다.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추가함(안 제9조제3항제1호, 제10조제1호다목).
- 라. 체육시설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, 잔디 훼손시 훼손 현황 신고 및 복구·보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4항)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설치·운영하는데”를 “설치·운영하기 위해”로, “건강증진과 여가선용”을 “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질높”을 “질 높”으로, “관리·운영”을 “관리·운영(이하 운영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리·운영을”을 “운영을”로, “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“이라 한다)함”을 “운영함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 (이하”를 “자(이하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진행중”을 “진행 중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“체육경기 :”를 “체육경기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체육행사 :”를 “체육행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공행사 :”를 “공공행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문화예술행사 :”를 “문화예술행사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일반행사 :”를 “일반행사: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가”를 “시가”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1.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
2.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3.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·규모·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강우, 폭염,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행사·공연 시 잔디 보호 및 이행계획서 제출
2.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
3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
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조기 :”를 “조기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주간 :”을 “주간: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야간 :”을 “야간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조기 :”를 “조기: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주간 :”을 “주간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야간 :”을 “야간: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“주간사용시간”을 “주간 사용시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 중 “성 인 :”를 “성인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청소

년 :”를 “청소년 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어린이 :”를 “어린이 :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예술행사 :”를 “문화예술행사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일반행사 :”를 “일반행사 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주최측”을 “주최 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“수급자 :”를 “수급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이용자 :”를 “이용자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: 면제

제10조제1호가목 중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으로,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을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“본인 :”을 “본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“이용자 :”를 “이용자: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자 :”를 “자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”을 “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”으로,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”을 “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의2제1항”으로, “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”을 “사람, 「국민기초 생활 보장법」”으로, “본인 :”을 “본인: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차상위계 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”를 “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”로, “자 :”를 “자:”로 하며, 같은 호 바목을 삭제 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당일 :”를 “당일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10 일 전 :”를 “10일전: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5일전 :”를 “5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1일전 :”를 “1일전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60일전 :”를 “60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30일전 :”를 “30일 전: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20일전 :”를 “20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호 라 목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전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20일전 :” 를 “20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15일전 :”를 “15일전:”로 하며, 같 은 호 다목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5일전 :” 를 “5일전: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1일전 :”를 “1일전: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“60일전 :”를 “60일전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0일전 :”를 “30일전: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0일전 :”를 “20일 전: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10일전 :”를 “10일전: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위해발생시”를 “위해가 발생할 때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용자는 행사로 체육시설 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, 시장이 정하 는 잔디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, 잔디 훼손이 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 분의 현황 신고 및 복구·보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. 1. 1.부터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<u>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u> 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<u>건강증진과 여가선용</u> 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기 위해</u> ----- ----- <u>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</u> ----- -----.
제2조(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·기능 및 그 위치는 “ <u>별표1</u> ”과 같다.	제2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.
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용자에게 <u>질높은</u>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<u>관리·운영</u> 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관리·운영의 일반원칙) ① ----- ----- <u>질 높</u> ----- ----- <u>관리·운영(이하 운영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<u>관리·운영</u> 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체육시설을 <u>관리·운영(이하 “운영”이라 한다)</u> 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	② ----- ----- <u>운영을</u>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함</u> ----- ----- -----

한다.

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,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(생략)

2.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·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 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3. (생략)

제5조(사용허가) ①·② (생략)

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-----

자(이하 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진행 중-----
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사용허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체육경기 : 대한체육회, 대한 장애인체육회, 서울특별시교육청(산하 지역교육청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협회(단체)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(주관)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. 다만,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.

2. 체육행사 :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. 단, 상업적 목적(광고, 방송 등) 행사는 제외한다.

3. 공공행사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(주관)하는 경기 및 행사

4. 문화예술행사 :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행사

5. 일반행사 :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

④ · ⑤ (생략)

1. 체육경기: -----

-----.

2. 체육행사: -----

-----.

3. 공공행사: -----

4. 문화예술행사: -----

5. 일반행사 : -----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.

1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·주관하는 체육행사

2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·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제5조의2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

① -----

-----.

1. ----- 시가 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--
-- 각호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4(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1.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

2.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체육시설
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
이 구분한다.

1. 하절기(4월~9월)

가. 조기 : 05:00~08:00

3.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·규
모·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
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강우, 폭염, 한파 등 기상 악
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
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
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우

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
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
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행사·공연 시 잔디 보호 및
이행계획서 제출

2.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
수립 및 복구

3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조치

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
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
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
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6조(사용시간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조기: -----

나. 주간 : 08:00~19:00

다. 야간 : 19:00~다음 날 05:00

2. 동절기(10월~다음 해 3월)

가. 조기 : 06:00~09:00

나. 주간 : 09:00~18:00

다. 야간 : 18:00~다음 날 06:00

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.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.

제7조 (사용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·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성인 : 19세 이상

2. 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

나. 주간: -----

다. 야간: -----
--

2. -----

가. 조기: -----

나. 주간: -----

다. 야간: -----
--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 주간 사용시간-----
--.

제7조 (사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성인 : -----

2. 청소년 : -----
--

3. 어린이 : 12세 이하

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 ① (생략)

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체육경기, 공공행사, 문화예술행사 :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

2. 일반행사 :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

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·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④ (생략)

제9조(입장료)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·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
3. 어린이 : -----

제8조(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문화예술행사: -----

2. 일반행사 : -----

③ -----

----. 다만,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입장료) ① -----

-----.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러하지 아니다.

1. (생략)

2.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
담당 임직원 · 지도요원 · 출전
선수 등이 경기 · 행사의 개최
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

3.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

1. 18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주최 측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_____.

수급자,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
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
인:

2.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
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
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:
100분의 30 감액

3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
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
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
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
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
같다)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
자 :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
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.
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
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
는 그러하지 아니함

4. (생략)

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
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
른 임산부 본인 : 면제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
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
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
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
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
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
한다.

2. -----

----- 이용자: -

<삭 제>

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
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
른 임산부 본인: 면제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.

--.

가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100분의 50 감액

나.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illegible]

나. ----- 이용

자: ----- . -----

----- .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
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
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
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
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라. (생략)

마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
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
제하는 자 : 100분의 10 범
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
에 따라 감액. 다만, 가목
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
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
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함

바. (생략)

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
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
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
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
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
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

다.-----

--- 자, 「제대군인지원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
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
따른 제대군인: ---

라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.

-----.

가. -----

--- 가족, 「장애인복지

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100분의 50 감액

나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다. ~ 마. (생략)

법」-----

----- 5·18
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
항 ----- 사람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---- 본인: -----
-

나. -----

----- 차상위계층
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
활동 지원조례」-----

---- 자: -----
-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

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

자 : 100분의 5 범위에서

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

감액

사. (생략)

3. ~ 5. (생략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삭 제

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(사용연기를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.

1.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

가. 신청 당일 : 전액 반환

나. 10일전 : 전액 반환

다. 5일전 : 10분의 9

라. 1일전 : 10분의 7

2. 별표 3의 사용료 시설. 다만,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
가. 60일전 : 10분의 7

나. 30일전 : 10분의 5

다. 20일전 : 10분의 3

라. 10일전 : 10분의 1

3.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(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)

<삭 제>

사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가. -- 당일 : -----

나. 10일전 : -----

다. 5일전 : -----

라. 1일전 : -----

2. -----.
-----.

가. 60일전 : -----

나. 30일전 : -----

다. 20일전 : -----

라. 10일전 : -----

3. -----

--

가. 20일전 : 10분의 9

나. 15일전 : 10분의 8

다. 10일전 : 10분의 7

라. 5일전 : 10분의 6

마. 1일전 : 10분의 5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·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60일전 : 10분의 7

2. 30일전 : 10분의 5

3. 20일전 : 10분의 3

4. 10일전 : 10분의 1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발생시

2. (생략)

제14조(사용자 책임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가. 20일전 : -----

나. 15일전 : -----

다. 10일전 : -----

라. 5일전 : -----

마. 1일전 :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입장료의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60일전 : -----

2. 30일전 : -----

3. 20일전 : -----

4. 10일전 : -----

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 위해가 발생할 때

2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용자 책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사용자는 행사로 체육시설

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,
시장이 정하는 잔디 보호조치를
이행하여야 하며, 잔디 훼손이
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분의 현
황 신고 및 복구·보수를 위한
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